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호	55
-------------	----

제출년월일 : 1995. 1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 현행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검정고시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수수료를 1건당 200원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제증명수수료는 1건당 3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 제증명수수료 징수규정의 이원화로 민원행정의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나고 있어, 검정고시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수수료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징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검정고시에 관련된 제증명수수료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2조).
 - 현행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 개정근거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2조(교육부령 제663호, 1995.8.1.)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17조(교육부령 제664호, 1995.8.1.)

□ 조례안 : 덧붙임

□ 참고자료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 ①교육감은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자로부터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②검정고시에 관련된 각종 제증명서(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포함)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